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길영, 김성준,
김영철, 김춘곤, 김형재,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
박승진, 박영한, 박철성,
봉양순, 왕정순, 유정인,
유정희, 이병도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한 신, 홍국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보험료 “분담분 중 일부를”를 “분담분을”로 개정함.(안 제9조제 2항)
- 나.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분담금 중 일부를”을 “분담금을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II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<u>분담금 중 일부를</u>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<u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<u>분담금을</u>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<u><삭 제></u></p>